

호수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발췌 공지】

제4조 (입소계약 및 이용료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목적 및 대상자,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당사자: 급여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보호자)가 시설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에는 그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내용

가.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 시설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장기요양수가) 변경, 비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해지·감경을 변경 등의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재계약 없이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입소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4. 계약해지

가. 입소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다.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입소자(보호자)가 입소신청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3) 입소자가 시설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5) 10일 이상 외박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 6)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7) 입소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해지 시 시설장은 입소자가 이미 납부한 급여비용을 정산·반환해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가.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등에 명기한다.

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담금(2025년 1월 1일 기준)

- 1) 식사재료비: 1일당 10,800원(3,600원×3회)
- 2) 간식비: 1일당 1,200원(600원×2회)
- 3) 상급침실 이용료: 1일당 5,000원(2인실 기준)
- 4) 입소자의 요양기관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5) 특별보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6) 기타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변경, 해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의 적용, 변경, 해지된 경우 해당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변경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달의 말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

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 ①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1. 상담 서비스: 입소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유선 전화, 내방, SNS를 통해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다.
 2. 급식 서비스: 입소자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매일 식사 3회, 급식 2회 이내)을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관리한다.
 3.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입소자에게 건강체크, 투약관리, 병원진료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관리한다.
 4. 물리재활 서비스: 정기적 물리(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심리사회재활 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6. 이동지원 서비스: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여가활동 서비스: 입소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8. 위생케어 서비스: 수시 배변관리, 구강관리, 목욕(주 1회) 등의 위생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자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한다.
 9. 이미용 서비스: 입소자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두발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정서지원 서비스: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나들이, 산책, 외부행사 참여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기타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서비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 라.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 마.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2. 입소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마.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 통보할 의무
-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마.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
- 바.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아.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1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1.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 또는 보호자의 관리 하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시설과 입소자의 배상 및 면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내·외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붙임1) : 시설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중 “제3조(입소·이용료 납부)”

◇ 시설급여 (1일)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일반실	90,450원	83,910원	79,240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치매전담실	-	94,220원	86,88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5,000원		
	식재료비(1식)	3,600원		
	간식비(1일 2회)	1,200원		
	이/미용료 등	무료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12%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2,170,800	2,013,840	1,901,760	일반대상자
	요양급여비용(88%)	2,387,880	2,215,230	2,091,940	감경대상자
	요양급여비용(92%)	2,496,420	2,315,920	2,187,030	
	요양급여비용(100%)	2,713,500	2,517,300	2,377,200	시설수급대상자
개 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542,700	503,460	475,440	일반대상자
	요양급여비용(12%)	325,620	302,070	285,260	감경대상자
	요양급여비용(8%)	217,080	201,380	190,170	
	식사재료비+간식비	360,000			간식 1일 2회 1,200원
	(해당)상급침실이용료	150,000			1일당 5,000원
입소비 총액		902,700	863,460	835,440	일반, 4인실 기준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